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 (김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7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:김 건·김미애·김기현

서일준 • 한지아 • 안철수

박성민 · 최수진 · 박수민

김상훈 · 신동욱 · 박충권

권영세 · 조배숙 · 주진우

조경태 • 이만희 • 백종헌

박수영 • 유용원 • 이성권

이헌승 · 엄태영 · 우재준

김위상 · 인요한 · 송언석

정성국 · 주호영 · 강대식

김승수 · 정희용 · 조정훈

이철규 • 조지연 • 김정재

이인선 • 윤상현 • 김성원

조승화 • 이종배 • 서명옥

강명구 · 최보윤 · 김형동

박상웅 의원(46인)

제안이유
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(이하 "안보리"라 한다)는 「국제연합헌 장」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·회복을 위하여 분야별로 다양 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안 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음.

그러나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가 단일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소관 부처가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개별 법률을 찾아 이 에 근거하여 행정입법을 하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어,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 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유 또한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이행 조치 수립 및 이행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 이에 관한 원활한 정보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안보리 결의가 그 목적에 맞게 국내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.
- 나.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조치 수립·시행과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다.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외교 부에 "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"를 둠(안 제6조).

- 라.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외교부장관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소관 사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경 과 및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(안 제8조).

법률 제 호
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"(이하 "안보리결의"라 한다)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「국제연합헌장」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·회복을 위하여 채택한 권고·조치 등의 결정문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조 치를 신속하게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4조(국가의 권익 확보) 안보리결의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안보리결의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.
 - ② 안보리결의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

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원회) ① 안보리결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"안보리결의 이행 심의위 원회"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- 1. 안보리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안보리결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 - 3. 그 외 안보리결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외교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.
 - ④ 위원회는 심의·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행정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안보리결의의 공표) 외교부장관은 새로운 안보리결의가 채택되거나 기존 안보리결의가 변경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,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- 제8조(위원회 의결사항의 반영 등) 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에 반영한 내용의 이행경과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